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40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이달희 · 김대식 · 김예지  
김상훈 · 김종양 · 서천호  
박형수 · 최보운 · 박충권  
윤재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처의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여지가 있음. 이로 인해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무역업계 등 관련 종사자들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0조의4제1항).



법률 제 호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대한 특례) 제24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시행한다.



